

통상산업부 발족**2실 4국 40과로 개편**

통상산업부의 지원부서를 제외한 사업조직이 2실 4국 40과 9담당관제로 개편돼 기존 상공자원부의 66개과에서 17개과가 축소됐다.

기존 상공자원부의 통상정책국, 무역국, 통상진흥국이 통합되는 통상무역실에는 통상정책과, 무역정책과, 수출과, 수입과, 무역협력과, 통상관리무역과 등 6과와 세계무역기구담당관등 9담당관제로 개편됐다.

또 자원정책국, 석유가스국, 전력석탄국 등 3개국이 통합되는 자원정책실은 과거 3국, 19개과에서 자원정책과 등 1실, 13과로 축소됐다.

산업기술국을 흡수하는 산업정책국은 산업정책과와 산업진흥과가 산업정책과로 통합되고 산업기술정책과와 산업기술진흥과, 산업기술인력지원과, 산업기술협력과 등 4개과가 산업기술기획과와 산업기술개발과 등 2개과로 통합돼 과거 2국 10개과에서 1국 6과로 축소됐다.

항공우주산업을 직접 관掌하는 기초공업국은 기계소재공업국

당시의 6개과에서 5개과로 축소되었는데 항공우주공업과와 산업기계과는 변동없고 수송기계과와 조선과가 자동차조선과로 단일화되었으며 제철과와 소재금속과가 철강금속과와 기초화학과로 변경되었다.

또한 통상산업부 장관은 朴在潤 전재무부장관이, 朴雲緒 차관은 유임됐으며 金喆壽 전 상공자원부장관은 WTO 통상대사로 임명되었다.

생활공업국은 섬유소재과, 섬유생활공업과, 화학공업과, 전자기기과, 전자부품과, 전기공업과 등 6개과로 개편됐다.

중소기업국은 종전 상공자원부의 5과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방위산업체가 조달계약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품질의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규격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및 당해년도 조달계획물량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외에는 품질확인요청에 응하도록 함(제10조의 2).

- 방위산업체가 방산시설의 설치·이전 및 방위산업체의 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방위산업 육성기금에서 대출받는 경우의 금리를 현행 연9푼에서 연7푼으로 인하함(제23조).

-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물자의 국산화개발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유인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도록 함(제31조).

-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체가 원자재를 저장한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발주하였으나 도입지연으로 방위산업물자의 적기납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축 원자재의 전량의 사용을 승인할

방산특조법 시행 규칙**개정****국방부, 통상산업부
공동고시**

국방부와 통상산업부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고, 1994. 3. 22 동시에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해당시행규칙을 개정고시했다.

1994. 12. 29일자로 고시된 동

수 있도록 함(제55조).

특히 동 규칙 제31조의 제시한 국산화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산화 기본방향

- 연구개발·장비도입 및 운용 관리등 전단계에 걸쳐 국산화 개발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국산화 추진
- 국산화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개발대상품목을 고시하여 경쟁개발 유도
- 개발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국산화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기능 및 기술분야별로 국산화 개발업체 및 협력업체간 공동 개발 유도

국산화 대상품목 선정기준

-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불가피한 품목
- 장차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 품목
- 수입대체효과가 높은 품목
- 기술파급효과가 큰 품목

보세공장으로 지정

항공기부품 제조업에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방위산업용 항공기 및 동 부분 품 제조업이 내수용 보세공장 업종으로 신규 지정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었

다.

제정경제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와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중 개정령을 총리령 제48호로 고시했다.

지금까지의 방산용 항공기 부분품 수입시 관세감면을 받는 절차는 국방품질관리등에서 소요량 증명을 발급받아 통상산업부(구 상공자원부) 장관의 관세감면대상 물품 확인후 세관에서 관세감면을 받고, 국방품질관리소의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 있었다.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은 그 수량이 막대한데 반하여 기존 관계 법령 등에서는 그 부분품이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싼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통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내수용 보세공장 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항공기 부분품을 통관절차없이 보세공장내로 반입하여 가공·제조한 뒤 통관하면 관세법상 항공기 및 동 부분품으로 분류되어 무세로 수입통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성기 또는 단품등의 상태로 통관되기 때문에 그 수량이 대폭 적어지고 그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검사수입요령공고

공진청, 항공산업관련에

공업진흥청은 12월 16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따라 검사 항공기의 수입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 '항공우주산업검사수입업체 지정에 관한 운용요령'을 제정 고시했다.

동 운용요령에 따르면 '항공기 등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대상'(공진청 고시 제2호)에서 정한 품목 분류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다음의 4종은 그 지정대상에 서 제외시켰다.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기기류중 동력장치 및 동력장치 기기류(단, 동력장치 기기용 부품은 제외) ▲항공법 제20조에 규정한 장비품 ▲기타 공업진흥청 장이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품.

기술과제 43건 확정

통신부 새해 자금지원 대상에

통상산업부는 12월 15일 제4차 공업기반기술개발전문위원회를 열어 자동차용 크랭크축의 경량

화기술 등 총 43개의 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과제 개발에 모두 4백51억6천5백만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확정된 개발과제는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32개 과제(37억7천만원)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4개 과제(69억원)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2개 과제(9천5백만원) ▲G7 프로젝트사업 4개 과제(2백74억원) ▲중형항공기 개발사업(7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을 고쳐 기술수요 조사체계를 **產·學·研**기술교류회를 통해 발굴하는 체제로 바꾸고 정부출연금의 지원범위도 국제규범에 맞춰 조정키로 했다.

국산화품목 200개 선정 시제품 개발자금 우선 지원

통상산업부는 94년도 제3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레이저가공기 등 2백개품목을 선정, 12월 21일 고시했다.

국산화 대상품목은 분야별로 ▲산업기계 92개 ▲수송기계 37개 ▲조선 13개 ▲소재금속 5개 ▲전기전자 29개 ▲컴퓨터 하드

웨어 8개 ▲전기기기 10개 ▲섬유화학 소재 6개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시제품 개발 자금으로 공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기계공업진흥회, 전자공업진흥회, 전기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생산성본부 등 5개 공업발전기금 심의기관들을 통해 국산화 개발 회망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자금지원여부를 심의한다.

이들 품목의 국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연간 수입대체 6억4천만달러, 수출증가 4억4천만달러 등 총 10억8천만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7.5%에 이르나 당국이 물가안정에 주력할 경우 7.0%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남부 도민 편의위해 수원비행장 민항기 취항 건의

경기도의회 金日秀의원등 도의원 50명은 12월 17일 '수원비행장에 민항기 취항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은 수원등 경기도내 13개 시와 7개 군을 비롯 충남지역 일부를 포함할 경우 인구 700만이 거주하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원에 비행장을 두고도 김포공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군용비행장인 수원비행장에서 국내노선 항공이 주2회 정도 취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은 도의회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제84회 도정기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일정관계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차기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정식 채택되면 국방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